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9. 6(목) / 총 1매(본문1)</b>
<b>담당 부서</b>	건축정책과	<b>담당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한동균, 주무관 정치영</li> <li>• ☎ (044) 201-3755, 3758, 4752</li> </ul>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축법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관련

- **현행 「건축법(제81조제4항)」**에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지자체장”이라 함)이 **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,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,**
- **조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·개축·수선·용도 변경·사용금지·사용제한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**

< 보도내용 (9.6, 매일경제) >

<p>◆ <b>용산건물 ‘폭삭’ 잇었나…3곳중 1곳 버티기 영업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산구청 관계자는 “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관리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는 만큼 구청이 강제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없다”며 “불량 판정을 받은 곳이 보수·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합과 건물주에게 공문을 보내는 게 구청이 할 수 있는 전부”라고 하소연했다.</li> </ul>
--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한동균 사무관(☎ 044-201-357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